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6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김상훈
구자근 · 최보운 · 김태규
이양수 · 엄태영 · 김은혜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 금지) ① 항만운송사업자는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을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항만운송사업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제2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재위탁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0조의2(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 금지) ① 항만운송사업자는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을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항만운송사업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재위

② (생 략) 제28조의2(보고·검사)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사무실, 부선·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보고·검사) ①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재위탁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	---